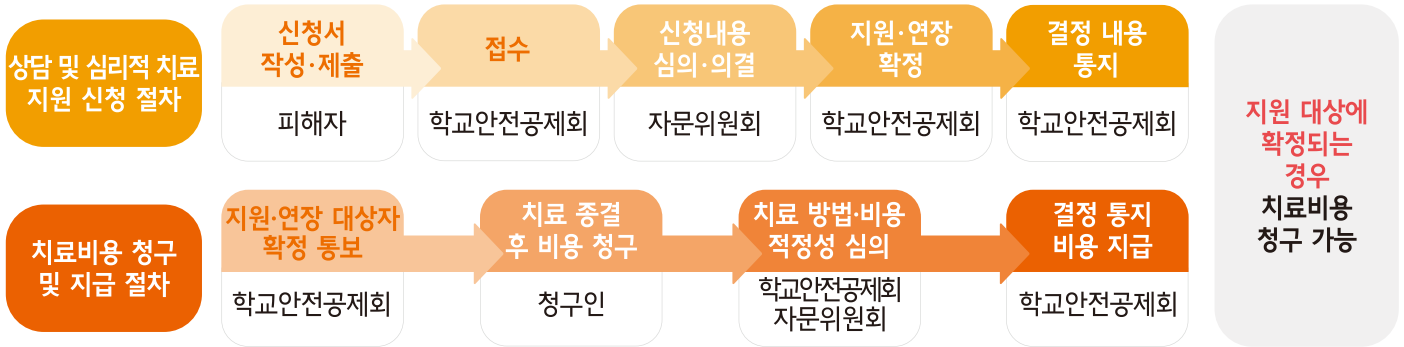


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 제도 안내

『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에 따라 **중대한 학교안전사고**로 피해를 입은 학생, 교직원, 교육활동참여자 및 그 가족에 대하여 **심리적 안정**과 **사회적응**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처리절차



※ 서류 접수 시 60일 이내 심사·결정. 사안에 따라 30일 연장 할 수 있음.(주말, 공휴일 제외)

지원 대상 학교



유치원,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공민학교, 고등학교, 고등기술학교, 특수학교, 각종학교,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



지원 대상 및 기간

- 지원대상** 피해 학생·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의 배우자·직계존비속·형제자매
 - 기 간** 1년(연장 가능)
- ※ 지원 받을 수 있는 상담기관은 꼭 공제회에 확인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. 지정기관이 아닌 곳에서 상담을 받으실 경우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.
 ※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. (사고통지 및 공제급여청구)

지원 신청 기간 및 비용 청구 기간

- 지원 신청**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로 공제회에 공제급여를 청구한 날로부터 3년 이내
- 비용 청구**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종료 후 6개월 이내



신청서류

상담 및 치료 지원 신청 시		(대상자로 선정된 경우)치료비용 청구 시	
구 분	내 용	구 분	내 용
상담·심리 치료대상자 선정 신청서(원본)	- 본인 또는 학교장이 대리 신청하여 등기우편 발송 -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학교장 날인 불필요	상담·심리 치료비용 청구서(원본)	- 본인 또는 학교장이 대리 신청하여 등기우편 발송 -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학교장 날인 불필요
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(원본)	- 대리 신청 시에도 청구인 직접 작성 및 서명	진료비 계산서·영수증 (원본)	- 그 밖에 치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(원본)	- 신청인이 피해자 본인이 아닌 경우	약제비·계산서 영수증 (원본)	
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(원본)	- 신청인이 피공제자 본인이 아닌 경우	청구인 통장 표지 (사본)	
진단서 (원본)	-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발행	기타 서류	- 그 밖에 치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기타 서류	- 그 밖에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		

※ 자문위원회 및 공제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 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. ※ 신청서, 동의서, 위임장 등의 서식은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 홈페이지▶자료실▶서식자료에서 출력하여 활용

